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46
----------	-------

발의연월일 : 2018. 12. 21.

발 의 자 : 이원욱 · 김현권 · 정세균
김병기 · 강훈식 · 이후삼
김영진 · 안호영 · 김철민
우원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에너지원에 따라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단일한 계정에서 회계처리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는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별도의 계정을 두어 회계처리를 하게 되면, 에너지원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회계처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 계정) 전기판매사업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20조의2(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 계정) 전기판매사업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수입 및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u></p>